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4호바목, 제4조제4항제6호바목 중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표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을 “구분”으로 변경한다.

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④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바. 제4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호다목1) 및 2)의 경우	864 MHz~869 MHz	-27 dBm 이하	1 MHz
	869 MHz~894 MHz	-30 dBm 이하	1 MHz
	949.3 MHz~960 MHz		
1호다목6)의 경우	470 MHz~703 MHz	-26.2 dBm 이하	6 MHz
	758 MHz~773 MHz	-32 dBm 이하	1 MHz
	773 MHz~803 MHz	-50 dBm 이하	1 MHz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바. 제6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2) 사업자 방향의 경우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호다목1) 및 2)의 경우	864 MHz~869 MHz	-27 dBm 이하	1 MHz
	869 MHz~894 MHz	-30 dBm 이하	1 MHz
	949.3 MHz~960 MHz		
1호다목6)의 경우	470 MHz~703 MHz	-26.2 dBm 이하	6 MHz
	758 MHz~773 MHz	-32 dBm 이하	1 MHz
	773 MHz~803 MHz	-50 dBm 이하	1 MHz

제4조제6항제4호다목 중 “점유주파수대역폭”을 “300 kHz”로 변경한다. 제4조제6항제4호바목 중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표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을 “구분” 으로 변경하고, “200 kHz” 를 “1호 다목1)의 경우” 로 변경한다.

⑥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각각 바깥쪽으로 300 kHz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37 dB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호다목1)의 경우	864 MHz~869 MHz	-27 dBm 이하	1 MHz
	869 MHz~894 MHz	-30 dBm 이하	1 MHz

제4조제8항제6호라목, 제4조제10항제6호라목 중 대역외발사 조건표를 국제표준 (ITU/3GPP)에서 정한 방식으로 변경한다.

⑧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3.5 GHz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대역외발사 (dBm)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끝에서 이격 (MHz)	10 MHz, 15 MHz, 20 MHz, 40 MHz	50 MHz, 60 MHz, 80 MHz, 90 MHz, 100 MHz	분해대역폭
± 0~1	-13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
± 0~1		-24	30 kHz
± 1~5		-10	1 MHz
± 5~점유주파수대역폭		-13	
± 점유주파수대역폭 ~ (점유주파수대역폭+5)		-25	

⑩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4.7 GHz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대역외발사 (dBm)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끝에서 이격 (MHz)	10 MHz	20 MHz	30 MHz	40 MHz	50 MHz	60 MHz	70 MHz	80 MHz	90 MHz	100 MHz	분해 대역폭
± 0~1	-13										점유주파수대 역폭의 1%
± 0~1					-24						30 kHz
± 1~5					-10						1 MHz
± 5~점유주파수대역폭					-13						
± 점유주파수대역폭 ~(점유주파수대역폭+5)					-25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2호, 2023. 1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